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74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이병진 · 김 윤 · 허성무
박용갑 · 김현정 · 김남근
김동아 · 정일영 · 최민희
김문수 · 강득구 · 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신고 시 임업인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임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의 경우 신고 및 영업폐쇄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양삼과 같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배 기간에 따라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하도록 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채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산양삼, 15년 이상인 것을 산양산삼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의18 및 제18조의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중 “산양삼”을 “산양삼·산양산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4를 제3호의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의4(중전의 제3호의3) 중 “식물을 말한다”를 “식물 중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이란 특별관리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의5. “산양산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 연근이 1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토양, 종자 또는 종묘의 이용·사용 금지
2. 그 밖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3(제18조의18 및 제18조의1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등

제18조의18(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등) 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신고 수리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9(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영업폐쇄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특별관리임산물을 제조한 경우
 3. 폐업,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인하여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8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계속한 경우
 5.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과 관련하여 해당 제조업체의 대표자 등 임원·직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폐쇄 및 영업정지 등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8조의19에 따른 영업의 폐쇄

제3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8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영위한 자
1.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제18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u>산양삼</u>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 ----- ----- ----- ----- 3의3.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이란 특별관리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u><신설></u>	3의4. ----- ----- ----- ----- ----- 식물 중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말한다. 3의5. “산양산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

3의4. (생 략) 4. ~ 8. (생 략) <u>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u> <u>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u> <u>(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u> <u>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u> <u>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u> <u>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u> <u>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u> <u>“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u> <u>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u> <u>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u> <u>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u> <u>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u> <u>신고할 수 있다.</u> <u>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u> <u>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생산적</u> <u>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u>	<u>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u> <u>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u> <u>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u> <u>연근이 15년 이상인 것을 말</u> <u>한다.</u> 3의6. (현행 제3호의4와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u>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u> <u>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u> <u>(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u> <u>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u> <u>다)하려는 자는 생산적합성조사</u> <u>신청서를 첨부하여 산림청</u> <u>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u> <u>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u> <u>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u> <u>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u> <u>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u> <u>(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로</u> <u>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u> <u>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u> <u>실시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	---

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토양, 종자 또는 종묘의 이용·사용 금지

2. 그 밖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3장의3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등

제18조의18(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등) 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영업을 휴업하

<신 설>

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신고 수리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9(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영업폐쇄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

	<u>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u> <u>2. 영업정지기간 중에 특별관리임산물을 제조한 경우</u> <u>3. 폐업,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인하여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u> <u>4. 제18조의1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계속한 경우</u> <u>5.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과 관련하여 해당 제조업체의 대표자 등 임원·직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영업폐쇄 및 영업정지 등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제30조(청문)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2. (생 략)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8조의19에 따른 영업
의 폐쇄

5.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을 영위한 자

② -----

-----.

1.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

<u><신 설></u>	<u>를 하지 아니한 자</u>
	<u>4. 제18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u>
	<u>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u>
	<u>하지 아니한 자</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